

## '26년 3월 법인세 신고 협조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, 국세청 법인세과입니다.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8이 개정됨('26.2.27. 시행)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(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).

이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10서식(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)(이하 '서식')도 현재 입법예고 중('26.3.3.~16.)이나, 입법예고안 서식에 수정사항이 생겨 전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.

### 【상시근로자 계산방식】

기존 서식	(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/과세연도 개월수)의 값에서 100분의 1 미만 절사
입법예고안	(상시근로자별 근무 개월 수의 합계/과세연도 개월수)의 값에서 100분의 1 미만 절사
변경안	[(각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 수/과세연도 개월수)의 값에서 100분의 1 미만 절사한 값의 합계

따라서 3.11.~20.의 기간 동안은 해당 서식을 포함할 경우 신고서 제출은 불가능하고, 해당 서식을 제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홈택스 및 회계프로그램 개발 업체 개발 소요시간이 필요하여 3.21.(토)부터 서식을 포함한 정상적인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다만,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인 3.16.이후 해당 서식만을 첨부파일로 하여 별도 제출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(※ 해당 서식은 “홈택스 → 자료실” 공지 예정)

### 【별도 제출 경로】

세금신고 → 법인세 신고 → 법인세신고(정기, 중간예납) → <우측상단> 신고  
부속증빙서류 제출 → 조회 → 부속서류[첨부하기]

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☎(044) 204 - 3322~33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**【서식 수정 이후 일정】**

날짜	안내 사항
'26.3.11.~3.20.	서식 <b>제외</b> → 홈택스 법인세 신고시 변환파일로 <b>제출 가능</b> 서식 <b>포함</b> → 홈택스 법인세 신고시 변환파일로 <b>제출 불가능</b>
'26.3.16.~3.20.	(서식 제외하여 제출한 경우) <b>서식만</b> 첨부파일로 <b>별도 제출</b> ※홈택스 자료실에 상시근로자 명세서 서식 관련 공지 예정
'26.3.21.~3.31.	법인세 신고서(서식 포함) <b>정상 제출 가능</b> or (서식 제외하여 제출한 경우) <b>서식만</b> 첨부파일로 <b>별도 제출</b>

